[별지 제89호의 2서식]

자동차점검 •정비명세서

구분 : 고객용(영수증 겸용)

일련번호:AX9250-2020-C-000019

차 량 소유자	등 록 번 호	87모3359	차종(차명)	봉고3 트럭	주 행 거 리	2,175 km
	등 록 년 월 일	2019-05-14	점검 •정비 의뢰일자	2020-01-15 13:10		
정 비 사업자	사업자등록번호	203-76-68360	정비업등록번호	011106000073		
	업 체 명 (대 표 자)	신당중부점 기아오토 양영철	주 소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98 신당동	(전화번호)	자동차 전문수리 02-2238-8490
점검 •정비완료일자		2020-01-15	출고일자	2020-01-15	정비책임자	양영철 (인)
점검 •정비내역		ECU 업그레이드(#427번 업글)	추가정비동의여부	□동의 □부동의		

작업내용	부품				공임
	구분	수량	단가	계	
ECU 업그레이드(#427번 업글)					

부품		공임		소계		부가가치세		총계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.

2020 년 01 월 15 일

작성자 양영철 서명

대표이사 양영철 (인)

1.정비업자가 점검 •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 •정비를 합니다.
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제2호)
가.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 •정비일로 부터 90일 이내
나.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: 점검 •정비일로 부터 60일 이내
다.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: 점검 •정비일로 부터 30일 이내

2.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,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,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
3.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.
가.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(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) : A
나. 재제조품 : B 다. 중고품(재생품을 포함합니다) : C 라. 수입부품 : F

※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KIA AUTO Q